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운수(합) 택시기사가 동료 교대근무자의 차로 퇴근하던 도중 두통이 발병하여 상병명 “뇌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

(89-276호 89.8.21.기각)

재결서

이유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주소 : 대전직할시 동구 대화동

원처분청 : 대전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홍○○

주소 : 상동

피재근로자

성명 : 상동

주소 :

소속 : ○○운수합자회사

주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대전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5.17.자 홍○○(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자는 ○○운수합자회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9. 1. 6. 01:00경 교대 근무자인 동료 박○○의 차를 타고 퇴근 도중 두통이 발병하여 약을 사먹고 귀가하였으나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익일 대전대학한방병원에서 진단결과 “뇌경색증”的 상병이 진단되어 1989. 2. 19.까지 요양하다가 한독의원으로 전원하여 상병명 “뇌졸증(뇌경색)에 의한 우반신 마비(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우반신 부분마비, 신경통 및 연하장애)”로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의 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상병이 발병이전 과로 및 정신적 긴장 등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판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평상시 피곤한 증상과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 간헐적(88년도 10회)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병력이 있는 자인데다가 1일 12시간의 과중한 운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

이 업무상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전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
(1989.6.23. 이○○)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7.6. 대전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1989.6.19. 오○○)
4. 요양신청서 사본
(1989.2.28. 홍○○)
5. 요양 결정 결의서 사본
(1989.5.17. 대전지방노동청장)
6. 진료확인서
(1989.6.22. 이○○ 신경정신과 의원장)
7. 확인소견서
(1989.6.21. 충남대학교 병원장)
8. 자문의 소견서 사본
(1989.5.16. 이○○)
9. 한방정신과 소견서 사본
(1989.5.8.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장)
10.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
(1989. 5. 행정주사보 위○○)
11. 문답서 사본
(1989. 4. 13. 박○○)
12. 문답서 사본
(1989. 3. 27. 홍○○)
13. 자술서
(1989. 7. 1. 길○○, 박○○)
14.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사본
(1987, 1988년도분 홍○○)
15.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1989. 1. 6. 01:00경 퇴근도중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한독병원에서 요양중인 자로서 청구인은 피재자의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발병직전의 정신적충격 등에 기인한 것

임에도 업무의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현재 요양 가료중인 한독병원 주치의 소견은 “뇌졸증(뇌경색)에 의한 우반신마비”이고 발병후 입원치료한바 있는 대전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주치의 소견은 “과로등의 신체적 부담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 뇌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는 1989. 1. 3. 15:00까지 근무후 1. 4는 휴무이고 1. 5. 15:00부터 근무를 한 사실로 보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발병당시 근무사항을 과로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발병직전 근무중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원처분 청 조사당시 “근무중 교통사고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재자의 진술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둘째 : 피재자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신경정신과의원 및 충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신경정신계통의 질환을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재자의 87, 88년도 정기건강진단서상의 혈압이 각각 120/80 mmHg, 110/70mmHg 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 등 기준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해발생 이전 피재자의 근무상황으로 보아 과로나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상병명인 “뇌경색증”은 뇌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심근경색, 부정맥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동 질환은 작업환경이나 과로 등 작업조건과는 상당관계가 없는 것 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원인불명의 기준질환이 자연과정에 의한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생산차장이 사내 회의실에서 회의 도중 쓰러져 상병명 “뇌졸증(뇌경색)”으로 요양을 신청한 경우

(89-460호 90. 1. 22. 취소)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채○○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원처분청 :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상 동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상 동

소속 : 주식회사 ○○

주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9. 8. 30.자 “채○○”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8. 30.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생산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6. 19. 12:10경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도중 쓰러져 상병명 “뇌졸증(뇌경색)”으로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과다한 업무 및 신규업무 현황파악 등으로 23:00 이후까지 연일 계속되는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의중 생산부진 등에 대한 집중추궁을 당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1989.11.14. 채○○)

2. 답변서

(1989.11.20. 원처분청)

3. 심사결정서 사본

(1989.10.19. 심사관 홍○○)

4. 요양 신청서 사본

(1989.6. 채○○)

5. 요양 결정 결의서 사본

(1989.8. 원처분청)

6. 소견서 사본

(1989. 영동세브란스병원장)

7. 자문의 소견서 사본

(자문의 장○○)

8. 상병조회 회신 사본

(1989.7.15, 1989.8.16. 영동세브란스병원장)

9. 건강진단개인표 사본
(1988, 1987, 1986. 채○○)
10. 문답서 사본(신○○)
11. 사실확인서
(1989.12. 채○○, 사업주, 노동조합장, 장○○, ○○, 김○○)
12. 출장복명서
(1990.1.20. 당위원회)

13.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해석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 소속 생산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6. 19. 12:10경 회의실에서 회의도중 발병 출도하여 상병명 “뇌출증(뇌경색)”으로 요양중인바,

첫째 : 원처분청 자문의는 “뇌출혈 소견없이 뇌경색만이 보이고 있으므로 산재가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의 소견이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담당주치의는 “우측 기저부의 뇌경색증으로 뇌출혈은 없었으며 발병전 경한 고혈압이 있었으나 본 질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다고 사료됨(뇌출혈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환자의 병력에 의하면 발병 이전에 지속된 과로가 병발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의 소견이며 88년도 개인건강진단표상 혈압이 150/100mmHg으로 경도의 고혈압으로 인정되고,

둘째 : 청구인은 품질관리부서에서 89. 5. 22. 부로 생산부 생산관리담당 차장으로 전보되어 생산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원자재 및 부품소요 판단, 공정간의 생산진행관리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9. 6. 19. 10:00부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생산부 간부회의에 참석중 12:10경 발병하였는 바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 및 출근부 등으로 보아 특히 과격한 업무로 발

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1) 출근부상 퇴근시간의 기록은 없으나 경비 담당 김 ○○은 “경비실에서는 대리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출근시간만 기록할 뿐, 퇴근시간이나 연장근무 시간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 청구인은 “매일같이 오후 11시가 넘게까지 업무를 강행하던 중 연일 계속되는 무리한 생산업무를 감당치 못하고 생산부 간부회의에서 생산량 부진등에 대한 집중추궁을 당하여 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주, 노동조합장 및 생산관리조장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1989. 5. 22-6. 18. 기간의 임금 및 야간근무 현황표상 생산직 근로자 180여명중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하루 평균 3시간씩의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당 심사위원회에서는 현지 출장하여 사실을 조사한 바 총무과장 직무대리 임○○은 “노사분규로 생산에 차질이 생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였는데 생산차질은 생산차장이 책임을 지고 있어 청구인은 직원 2명을 데리고 23:00-24:00가 되어야 퇴근할 정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1989. 6월의 생산목표량에 대한 실적은 80%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납품업체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납품지연을 이유로 다른 업체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상 사실을 종합 판단컨대, 청구인의 경우 재해전의 계속된 연장근무와 생산실적 부진등으로 인한 육체적 및 정신적피로의 축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시켰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마땅히 최소 되어야 한다.